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 · 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2026. 10. 14.(수), 14:00 ~ 17:0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 · 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2026. 10. 14.(수), 14:00 ~ 17:0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CONTENTS

006 Ⅰ 개회사

008 Ⅱ 축사

011 Ⅲ 발제

012 ☑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유진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22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02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체계의 국제 비교
송윤진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03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강태경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42 ☑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안
전윤정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051 Ⅳ 종합토론

☑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 및 재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노현서 부단장 |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 수사 현장에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최근 발생·검거 현황 분석 및 대응 정책
조승노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 제도와 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중요성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흰뫼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에서 본 피해지원체계 강화 방안
문옥희 센터장 |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PROGRAM

시간	내용
개회식	
14:00~14:20	**박광수** 원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민경** 장관 | 성평등가족부 **정웅석** 원장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조순애** 팀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
14:20~15:35	☑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유진**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체계의 국제 비교 **송윤진**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강태경**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안 **전윤정**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15:35~15:50	**휴식**
2부	**좌장 : 원혜욱**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50~16:55	☑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 및 재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노현서** 부단장 |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 수사 현장에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최근 발생·검거 현황 분석 및 대응 정책 **조승노**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 제도와 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중요성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흰뫼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에서 본 피해지원체계 강화 방안 **문옥희** 센터장 |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55~17:00	**폐회**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 · 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개회식

개회사 | 축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개회사

박광수

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광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축사를 맡아주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님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구자와 관계기관, 수사·법률 및 피해자 지원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과 수사 제도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유통방지 의무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개소 이래 150만 건 이상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센터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법률적 설치·운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협력, 정책연구, 홍보, 지역디성센터 지원 등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제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의 확산을 비롯해 오픈채팅방, 클라우드, 해외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과 유통환경의 등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한 번의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반복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피해영상물의 탐지와 삭제 통지(요청), 심의와 차단, 실제 조치 결과의 확인과 재유포 대응까지 각각의 단계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연속된 지원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올해 출범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은 관계기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역, 정부와 수사기관, 피해자 지원기관과 플랫폼 등 각 주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적시에 연결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와 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끊김 없이 이어지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삭제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유포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 수사와 피해지원, 기술과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이러한 지원체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범죄 양상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의 피해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원민경

장관

성평등가족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반복적으로 복제·재유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 확산과 재유포를 막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법률지원 및 심리·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연계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재유포를 반복하는
사이트와 유통망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확산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며,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발전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피해자 지원 현장과
수사,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평등가족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사

정웅석

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웅석입니다.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광수 원장님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지난 몇 년 사이 그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촬영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합성과 편집, 협박과 재유포로 이어지며,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한 번 유포된 피해영상물은 주소와 형태를 바꾸어 되살아나고,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범죄가 고도화될수록 피해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은 처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삭제와 차단, 상담과 회복이 제때, 끊김이 없이 이어져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수사기관, 심의기관과 지원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우리 법의 힘이 온전히 미치지 않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어려운 최전선에서 피해자와 함께해 온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해 센터의 삭제지원 체계를 연구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개별 기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기관 간 연계의 법적 기반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연구의 결과를 현장과 함께 검토하는 자리이자, 센터와 연구원이 실무와 연구를 잇는 협업의 첫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더 든든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더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 및 법·정책 개선방안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유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I 삭제지원의 공백 — 삭제지원 범위의 확대 · 남아 있는 사각지대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 접근매개정보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 지원기간 종료 후 유포 탐지 ·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IV 개선 방향 — 연쇄적 피해 구조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체계

2026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유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삭제지원 대상의 확대

불법촬영물
2018 삭제지원 조항 신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021 선제적 삭제지원 조항 신설

신상정보
2024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 신설

- 피해영상물의 급속한 확산과 재유포
- 국가의 피해자 보호 의무로서 「성폭력방지법」상 삭제지원 명시
- 다양한 범죄 양태의 등장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강화 노력으로서 대상 확대
- **삭제지원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 존재**

→ 대상 범위와 개시 요건으로 나누어 개선 지점 검토

■ I. 삭제지원의 공백

지원 공백과 쟁점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1 불법촬영물등
공백 기관 간 판단 기준의 불일치 가능성
개선 피해자 보호 관점의 판단 기준·절차 확립

2 신상정보
공백 사업자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서 누락
개선 법령간 불일치 정비

3 접근매개정보
공백 링크 등 유통경로는 삭제지원 대상에 미포함
개선 삭제지원 대상 유형의 확대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1 지원대상요청자의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공백 지원기간 종료 후 요청 없으면 지원 곤란
개선 기존 지원 대상 추가 유포 확인시 삭제지원 근거

2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공백 센터 연계가 경찰의 재량에 좌우
개선 초기 삭제·차단 이후 후속 지원 연계 체계 확립

공통 쟁점 재유포 대응 체계 강화
→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선제적 삭제지원 확대

3

■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삭제지원 대상의 세 가지 범주

현행 대상: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 **정보통신망 유통 특성상 접근매개정보까지 확대 필요**

01
불법촬영물등
피해영상물 자체

불법촬영물 · 비동의 유포물 ·
허위영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현행 대상 ● **포함**
쟁점
삭제·차단 판단 기준 및 권한·책임 분산

02
신상정보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

주소 · 성명 · 나이 · 직업 · 학교 ·
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진

현행 대상 ● **포함**
쟁점
「전기통신사업법」과의 불일치

03
접근매개정보
불법촬영물등에 접근하게 하는 정보

접속링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을 매개하는 정보

현행 대상 ○ **미포함**
쟁점
삭제지원 대상 범위의 제한

4

■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 1. 불법촬영물등

분산된 삭제·차단 구조의 지원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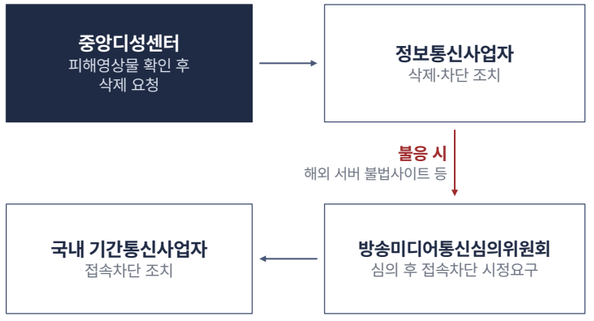

구조적 특징

- **요청 기반 삭제 구조**
  실제 삭제 여부의 사업자 협조 의존
- **후속조치로서의 접속차단**
  사업자 불응 시 방미심위 심의 경유
- **권한·책임의 분산**
  중앙디성센터·방미심위·사업자 간 역할 분산
- **판단 기준의 괴리**
  기관별 기준에 따른 지원 여부 상이

분산된 구조에서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의 운용 방식에 따라 지원 공백 발생

5

■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 2. 신상정보

국가의 삭제지원과 사업자 의무 범위의 불일치

신상정보 유포 → 유통 촬영물을 특정 피해자와 연결 → 현실의 사회적 관계·일상생활 침해

구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국가의 삭제지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규정	● 규정
신상정보	● 규정	✕ 규정 없음

※ 신상정보: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문제
사업자 협조 확보의 제약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의무 공백

→ **개선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 신상정보 명시적 추가**
→ 국가의 삭제지원과 사업자의 의무가 동일한 범위에서 작동

6

■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 3. 접근매개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서 접근매개정보의 기능

피해 확산의 핵심 유통수단

- 피해영상물 온라인 게시
- 접속링크 등 접근매개정보 공유
- 단시간에 다수에게 전달·재공유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 게시 → 성착취물 '배포'
- 단순 소개·연결을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면 직접 배포와 다를 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

- 링크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링크된 웹페이지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 수행

접근매개정보 제공 = 피해영상물 자체 유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 → 삭제지원 대상으로 고려

7

■ II. 삭제지원 대상의 범위 | 3. 접근매개정보

접근매개정보의 삭제지원 대상 명시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 접근매개정보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유통 방식에 대응한 확산 경로 차단

개정 방안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및 **접근매개정보(불법촬영물등이 게시 · 저장 또는 제공되는 인터넷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정보를 말한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개시 원칙

원칙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

- 피해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지정 대리인

예외 **선제적 삭제지원**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개시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무상 공백

유포가 확인됨에도 삭제지원 요청이 없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발생

→ **선제적 삭제지원의 확대 필요**

1. 지원기간 종료 후 유포 확인된 피해영상물
2. 수사기관 조치 후 후속 지원 연계

9

■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 1. 지원기간 종료 후 재유포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반복성에 대응하는 삭제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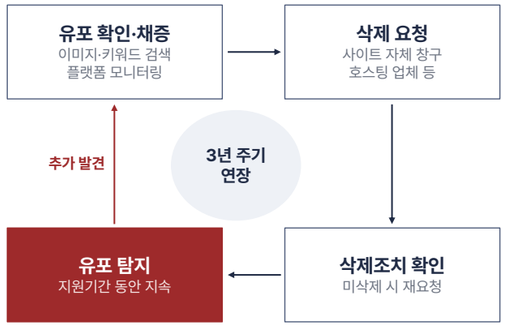

삭제지원의 성격

- **재유포 위험의 장기성**
  최초 유포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재유포 반복
- **삭제지원의 지속성**
  최초 삭제 이후에도 추가 유포 탐지·조치 계속
- **지원기간의 주기적 연장**
  지원 대상자 의사에 따른 3년 단위 연장

재유포가 반복되는 피해 특성 → 삭제지원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 과정

10

■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 1. 지원기간 종료 후 재유포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재유포 대응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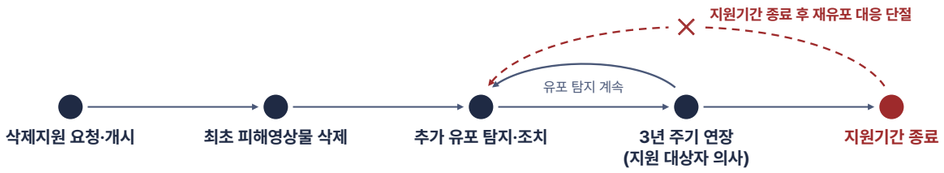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상당 기간 재발견 없음 | 심리적 부담으로 연장 미동의 | 연락 두절로 의사 확인 불가 → **추가 유포 확인 시 삭제지원 계속 곤란**

개선 방안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선제적 삭제지원) 제3호 신설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것이 추가로 확인된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및 접근매개정보"

11

■ III. 삭제지원 개시 요건 | 2. 수사기관 연계

수사기관의 초기 조치와 후속 삭제지원 간 연계 부재

■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경찰의 방미심위·사업자 대상 직접 삭제·차단 요청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수사기관 요청 시 중앙디성센터의 선제적 삭제지원 가능

연계 절차·의무 규정 부재
센터 삭제지원 요청 여부가 수사관 재량에 좌우

현행	사법경찰관리 유포 사실 확인	직접 삭제·차단 요청 방미심위·사업자	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 요청 임의·재량	미요청 시 재유포 지원 공백
개선	사법경찰관리 유포 사실 확인	직접 삭제·차단 요청 방미심위·사업자	중앙디성센터 통보· 삭제지원 요청 지체 없이 · 의무화 제23조의2 제3항 신설	선제적 삭제지원 추가 유포 탐지·후속 대응

※ 피해자 신원 미확인·피해 사실 미인지 시 직접 요청 곤란 →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후속 삭제지원으로 연결될 필요성 증대

임의·재량에 맡겨진 연계를 의무로 → 초기 대응과 후속 삭제지원의 연속성 확보

12

■ IV. 개선 방향

쟁점별 개선방안 종합

대상의 범위 개시 요건

구분	현행 공백	개선 방안	관련 법령
불법촬영물등	권한·책임 분산 구조에 따른 기관 간 삭제·차단 판단 기준의 괴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삭제·차단 대상 판단 기준 및 권한 조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5 신설 방미심위 심의 기준·절차
신상정보	사업자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서 누락 (국가 삭제지원 대상과 불일치)	**유통방지 의무 대상에 신상정보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개정
접근매개정보	접속링크 등 유통경로의 삭제지원 대상 제외	**삭제지원 대상에 접근매개정보 명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개정
지원기간 종료 후 유포 탐지	지원기간 종료 후 추가 유포 확인 시 별도 요청 없이는 지원 곤란	**지원 이력 있는 동일 영상물의 추가 유포에 대한 선제적 삭제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3호 신설
수사기관 요청	중앙디성센터 연계 여부의 수사관 재량 의존 (연계 절차·의무 규정 부재)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요청 시 중앙디성센터 통보 및 삭제지원 요청 의무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3항 신설

13

■ IV. 개선 방향

연쇄적 피해 구조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체계

개별 영상물의 삭제 여부를 넘어 **연쇄적 피해 발생 구조**에 대응하는 보호체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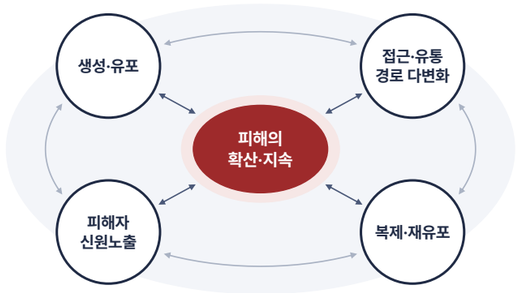

■ **권한·의무 체계의 재정비**
기관별 판단 기준·의무 규정 불일치 해소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삭제·차단 체계 정합성 확보

■ **삭제지원 대상의 확대**
영상물의 접근수단까지 포괄
→ 유통 경로 차단과 피해 확산 억제

■ **선제적 삭제지원의 확대**
추가 유포 탐지 대응 체계 확립
→ 단절 없는 지속적 지원 강화

피해자가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두터운 보호

14

감사합니다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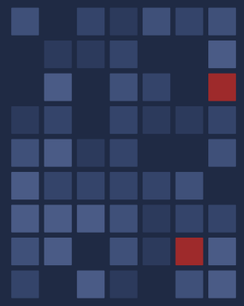

MEMO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

김혜미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혜미

2026.10.14.(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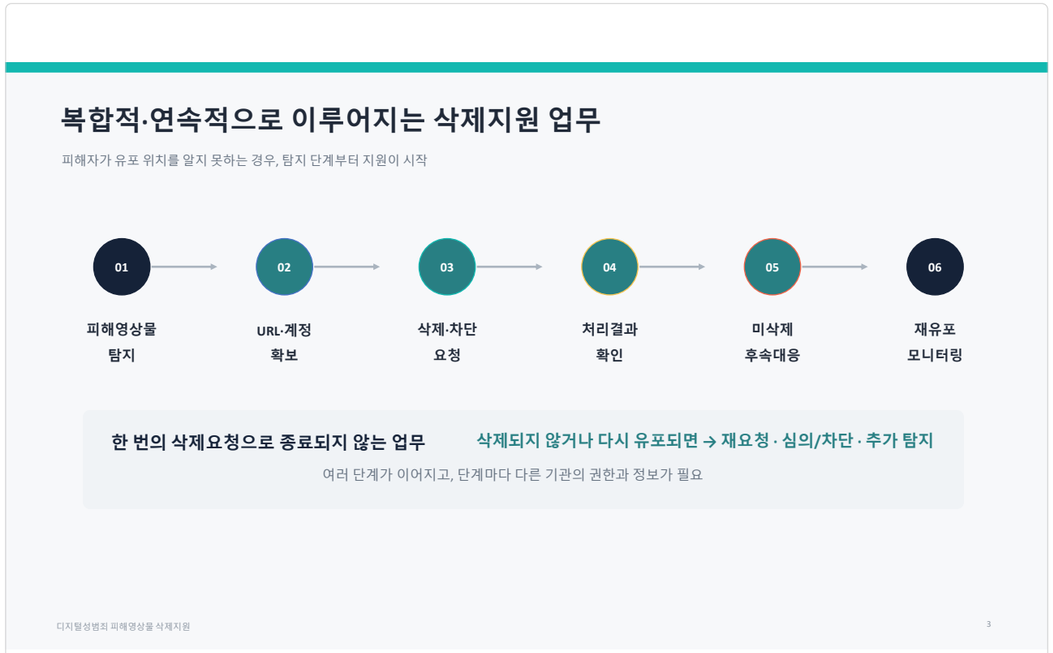

삭제지원에 관여하는 기관과 주요 역할

삭제지원에 관여하는 기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피해영상물 탐지 · 삭제지원 · 재유포 모니터링

수사기관

수사정보 확보 · 삭제·차단 요청 · 피해자 지원 연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심의 · 삭제 또는 접속차단

플랫폼 사업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 접속차단 조치

각 기관의 권한과 정보를 삭제지원 단계에 맞추어 연계할 필요

현행 삭제지원 법제의 구조와 한계

현행 법제

피해자 지원	센터의 삭제지원
수사	삭제·차단 요청
행정적 심의	삭제·접속차단
유통방지	플랫폼의 조치 의무

기관별 규율

실제 삭제지원 업무

탐지	법적 근거 존재
삭제·차단	법적 근거 존재
결과 확인	연결절차·책임의 구체화 필요
미삭제 대응	연결절차·책임의 구체화 필요
재유포 대응	연결절차·책임의 구체화 필요

개별 권한·의무의 근거는 확충되어 왔으나, 실제 업무를 연결하는 절차와 역할에 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

삭제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규범적 공백

구분	실제 업무에서 나타나는 상황	법적 근거·절차의 미비
업무 범위와 책임	피해자가 URL을 모르면 영상물 탐지부터 시작	탐지·재요청·모니터링의 범위와 지원 종료 기준
기관 간 정보공유	수사기관의 URL·유포경로, 센터의 탐지 자료를 함께 활용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요청·회신 절차
처리결과와 후속 대응	삭제요청 뒤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삭제에 대응	결과 회신·미조치 사유 확인과 다음 조치의 담당 주체
반복 유포	같은 영상물이 다른 주소·플랫폼에 다시 게시	확인된 영상물의 정보를 연계해 다시 탐지·요청하는 절차
해외 유포	주소가 바뀌는 해외 불법사이트·플랫폼에 계속 대응	수사·국제공조 정보와 삭제지원을 연결하는 절차

삭제·차단 요청 이후의 확인 및 후속대응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요청”이 아니라 실제 삭제 여부

삭제·차단 요청
근거·절차 존재

→

처리결과 확인
회신·공유 절차

→

미삭제 사유 확인
후속 판단의 기초

→

재요청·심의·차단
다음 조치로 연결

→

재유포 대응
추가 탐지·삭제

확인 · 회신 · 미삭제 시 후속조치에 관한 규율의 구체화 필요

삭제지원의 전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처리결과가 다시 지원체계로 돌아오는 절차 마련

삭제지원 법제의 규범적 체계화

실제 삭제지원 업무

탐지·확인 → 삭제·차단 요청 → 처리결과 확인 → 미삭제 대응 → 재유포 대응

이 과정을 뒷받침할 규범

업무 범위와 책임	기관 간 정보공유	결과 확인·후속조치	반복·해외 유포 대응
탐지부터 재유포 대응까지 지원 범위·종료 기준 명시	URL·유포경로 등 정보의 제공 범위와 협력 절차	처리결과 회신과 미삭제 시 다음 조치	동일 영상물 정보 연계와 해외 협력·신속 대응

업무별 권한·의무와 기관 사이의 연결 절차를 함께 구체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8

삭제지원의 전 과정을 고려한 법제 정비

탐지 → 삭제·차단 → 결과 확인 → 후속조치 → 재유포 대응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

업무 범위와 책임 · 정보공유 · 결과 확인 · 미삭제 시 후속대응 · 반복·해외 유포 대응

삭제지원이 개별 기관의 업무 관행이나 자발적 협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

법령과 업무기준을 통한 삭제지원 절차의 구체화

핵심 근거는 법령에, 변화가 잦은 세부 업무는 하위규범과 공통 기준에

법적 안정성 ↑ 업무 유연성

- **법률** — 삭제지원의 범위 · 기관별 권한과 책임 · 정보공유의 기본 근거
- **하위법령** — 기관 간 연계절차 · 처리결과 회신 · 후속조치의 기본 절차
- **공통 업무기준** — 기술적 기준 · 반복 유포 대응 · 기관별 세부 업무방식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9

감사합니다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체계의 국제 비교

송윤진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 제3주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국제 비교

— 삭제·차단의 법적 효과와 플랫폼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26. 10. 14.(수) 14:00–17:00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발표 |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핵심 질문 해외의 삭제·차단 체계는 무엇이 다르며, 그 차이는 국내 제도에 무엇을 시사하는가?

1.해외사례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삭제·차단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법적 강제력 | 플랫폼 협력 | 국제 협력

① 삭제·차단에 대한 법적 강제력의 정도 비교

②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플랫폼 및 국제협력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검토

2. 삭제 · 차단에 대한 법적 강제력 비교

자율 · 기술 협력 | 법정 전문기관 | 법정 우선처리 | 행정적 강제

전문기관 통보에 부여되는 법적 · 절차적 효과의 비교

- 영국 StopNCII — 기존 협력체계 기존 ※ 2026 법적 의무화로 전환 중
- 미국 NCMEC — 법정 전문기관 · 기술인프라 + 별도 플랫폼 의무
- EU Trusted Flagger — 전문기관 통보에 법정 우선처리 효과
- 호주 eSafety — Removal Notice 등 직접 규제 · 집행

그러나 삭제 · 차단의 실효성은 법적 강제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문기관 통보의 절차적 효과 + 플랫폼 · 기술 · 국제협력이 함께 작동한다.

※ 위 도식은 각 제도의 기본적 통보·규제 구조를 비교한 것으로, 미국·영국의 최근 플랫폼 의무 강화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설명

2-1 영국: 전문지원·기술협력에서 법적 의무화로

기존 협력체계

Revenge Porn Helpline — 플랫폼 협력 — StopNCII (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전문상담 · 삭제통보 플랫폼 연계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 2026 법제화

NEW 2026 Crime and Policing Act 2026(2026.4.29제정)

NCII 신고 → 플랫폼의 48시간 이내 삭제 의무

Trusted Flagger 지정 근거

Hash Registry 법적 근거

※ 관련 조항의 시행은 별도의 commencement regulations에 따름

전문지원 · 기술협력 + 플랫폼의 법적 의무가 결합된 체계로 전환

4

2-2 미국 NCMEC: 법정 전문기관 + 기술협력 + 플랫폼 법적 의무

기존 전문 · 기술 대응체계

CyberTipline 법률에 근거한 전문 신고·분석 인프라

Take It Down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플랫폼 협력 참여 플랫폼과 신고·기술체계 연계

NCMEC
피해 이미지 관련 전문 신고 · 기술지원 인프라

+

TAKE IT DOWN Act (2025)
2026. 5. 19.

유효한 NCII 삭제요청
↓
48시간 이내 삭제 의무
↓
FTC(연방거래위) 집행

플랫폼의 연방법상 의무 감독 · 집행

법정 전문기관 · 기술인프라 + 플랫폼의 삭제의무 · FTC 집행

5

2-3 호주 eSafety: 법적 강제력이 가장 분명한 모델

피해 신고에서 삭제 집행까지 하나의 규제기관이 연결

피해 신고 → eSafety 판단 → 삭제명령 Removal Notice → 24시간 내 삭제

Removal Notice = 플랫폼 등에 법적 삭제의무 부과

불이행 시 집행 · 민사제재 가능

피해지원 + 규제 · 집행권한을 eSafety에 결합

6

2-4 EU DSA Trusted Flagger: 통보에 '법정 우선처리' 효과 부여

※ DSA (Digital Services Act)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불법 콘텐츠 대응절차 등을 규율하는 EU 규정

① Trusted Flagger 지정
회원국의 DSA 감독기관이 전문기관 지정
→
② 불법콘텐츠 통보
→
③ 우선처리 · 신속한 결정
플랫폼의 법적 의무

Trusted Flagger 통보의 법적 효과

전문기관의 통보 → 플랫폼의 우선처리 · 신속한 심사·결정 의무 (DSA 제22조 제1항)

다만, 콘텐츠의 삭제 · 차단 여부는 플랫폼이 최종 결정

한국의 비교지점 |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통보에 어떤 절차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7

3. 아시아의 피해지원체계: 전문기관 중심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독립 규제기관보다 피해지원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

대만	일본	한국
SIARC 국가 설치·지원 전문기관	#8891 · PAPS · IHC 공공·민간 기능 분산	중앙 디성센터 법정 전문 피해지원기관
• 상담 · 신고 • 삭제지원 · 플랫폼 통보 • 증거보존 · 자원연계	• 상담 · 피해지원 • 온라인 신고 · 삭제요청 • 기관별 기능 분담	• 피해접수 · 상담 • 삭제지원 · 플랫폼 통보 • 수사 · 법률 · 의료 등 연계

공통점 | 피해지원 전문기관이 대응의 중심
한　계 | 전문기관의 삭제통보 자체에 부여되는 법적·절차적 효과는 제한적

한국의 비교지점 | 현행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어떤 법적·절차적 효과를 연결할 것인가

4. 해외 비교의 결론: 삭제·차단의 실효성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① 법적 강제력	② 통보의 절차적 효과	③ 플랫폼·기술·국제협력
호주 eSafety · 미국·영국의 최근 입법	EU Trusted Flagger	NCMEC · StopNCII · 국제 신고망

삭제·차단의 실효성은 하나의 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적 강제력 · 절차적 효과 · 협력체계가 결합되어 작동한다.

한국의 과제 | 어떤 기능에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협력체계와 연결할 것인가

9

5. 중앙 디성센터의 발전방향

현행 전문 피해지원기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

① 삭제통보의 제도적 지위 명확화	② 삭제통보의 절차적 효과 강화	③ 국제 · 기술 협력 강화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통보를 공식적인 전문기관 통보로 제도화	우선처리·신속한 심사·처리결과 통보 등 Trusted Flagger형 장치 검토	해시 기반 재유포 방지 해외 플랫폼 · 국제 신고망 연계

결론 | 삭제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술 협력으로 국외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다.

현행 전문기관의 삭제통보에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를 설계할 필요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강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의 현재

관계자 심층 면접 · SWOT 분석 요약

강점
- 축적된 실무 경험과 데이터
- 주요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
- 중앙 · 지역센터의 기능분담

약점
- 지원 대상 · 절차의 불명확
- 해외 사이트 대응의 한계
- 기관 간 정보연계 · 조정기반 취약

기회
-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관련 입법 논의의 활성화

위협
- 권한 배분 불명확 시 업무 중복 · 센터 역할 축소
- 재유포 · 변형 등 유통방식의 변화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 보장

강태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삭제지원은 하나의 절차

권한이 있어도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피해확산을 막기 어렵다

탐지 → 주소 확보 → 삭제 요청 → 심의·차단 → 수사정보 활용 → 조치 확인 → 재유포 대응

현행법은 각 단계의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만,
단계 사이의 정보와 책임을 연결하는 규정이 없다

1

현행 법령상 공백

1 단계별 권한과 후속책임
미조치·회신 누락 시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2 기관 간 연결
수사·심의·사업자 조치가 하나의 지원절차로 이어지지 않음

3 초기 대응과 사후 대응의 결합
신속 처리 · 이행확인 · 재유포 대응을 묶는 구조 부재

2

법령 정비의 기본 방향

삭제지원의 절차적 연속성을 법률상 보장

가
삭제지원을 독립적인 피해지원 제도화
범위·절차·책임

나
기관 간 연계 체계 법제화
센터·사업자·심의기관·수사기관

다
국가의 지속적 추진 제도개선 체계 마련
정책·조정·인력·기술·평가

3

정비 대상 법률과 핵심 내용

「성폭력방지법」을 중심 법률로, 4개 법률을 함께 개정

성폭력방지법
- 삭제지원의 범위와 절차
- 예방지원 · 재유포 방지
- 중앙 · 지역센터 업무연계
- 수사기관 연계 · 정보연계
- 협력체계 · 국외 대응 · 평가 · 인력

전기통신사업법
전문 신고기관·처리기한·시정명령

방미통위 설치법
긴급심의

정보통신망법
한시적 임시접속차단

성폭력처벌법
수사기관 지원제도 안내·통보

4

성폭력방지법

삭제지원의 범위와 단계별 책임

제7조의3 · 제7조의4 정비 및 조문 신설

1 유포 여부 탐지·확인
2 정보 수집·보존
3 삭제·차단 요청
4 처리상황·조치 확인
5 재요청·후속조치
6 재유포 확인·추가 지원

삭제 요청을 보낸 후 후속조치까지 하나의 제도로

담당자 지정 · 지원계획 수립 → 실제 조치 여부 확인 → 미조치 시 후속절차

5

성폭력방지법

지원 대상의 정비와 재유포 대응

유포 전 피해	협박·구체적 위험 → 상담·자료보존·특징정보 등록 형사고소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변형·재유포	재유포 대응을 필수 단계로 규정 새 신청 요구 금지 · 재판 종료만으로 종료 금지
중앙·지역센터	전국 공통 기준·사건 이관 시 반복 설명 금지 중앙: 기술·국제협력 / 지역: 접근성·회복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전문 신고기관과 처리기한, 이행확보

제22조의5 유통방지 의무와 삭제지원 절차의 직접 연결

중앙디성센터 (전문 신고기관) → **조치의무사업자** (우선 처리·법정기한) → **결과 통보** (조치 내용, 미조치 사유)

- 센터의 사실확인은 우선처리의 근거임(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음)
- 동일 자료의 반복 제출이나 피해자의 별도 신청 요구 금지
- 처리기한 예시: 명백·확산 위험 큰 정보 6시간 이내, 그 밖의 전문 신고 24시간 이내 조치 등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처리·통보 누락 → 시정명령 · 과태료 (센터는 확인·통보, 제재는 행정기관)

방미통위 설치법 · 정보통신망법

긴급심의와 한시적 임시접속차단

제1경로 · 플랫폼 직접
불법성 명백→센터 긴급삭제 요청→사업자 조치
2~6시간

제2경로 · 방미심위 긴급심의
법적 판단 필요·해외 사이트·불응 사업자
24시간 이내

불응·기한 경과 시 경로 전환, 급박한 사건은 병행 — 기존 확인자료와 사건관리번호로 재신청 없이 연결

임시접속차단
- 명백성 + 통상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위험에 한정
- 효력 48시간 상한, 본안 의결 없으면 실효·고지와 불복절차·오차단 즉시 해제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방지법

수사기관과의 양방향 연계

수사기관 ⇄ **중앙 · 지역디성센터**
- 지원제도 안내 · 요청 사실 통보 (처벌법 §23의2)
- 범죄혐의 확인 시 안내 · 수사 연계

정보연계
최소한의 항목 법률에 명시
공통 사건관리번호
표준양식

형사절차 종료 후 지원
수사·재판 종료만을 이유로
지원 종료 금지

자료 보존
삭제와 증거보존 병행
무결성 확인·이관 절차

성폭력방지법

국가의 지속적 추진 · 관리 책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5개 조문 신설

1	**협력체계**	상설 협력체계 + 센터 실무협의체
2	**국외 유통 대응**	국가 대응계획·원본 삭제와 국내 차단의 구분 안내
3	**지원정보 보호**	목적별 관리·접근권한·보존기간·국외 제공 최소화
4	**평가 · 제도개선**	처리건수가 아닌 과정 지표 — 소요시간·후속 연결률·재유포 대응
5	**전문인력 · 기술**	상시 대응인력·탐지·특징정보 기술 개발계획

10

추진 단계

단기
표준 요청·회신 절차 · 전담 연락체계 · 사실확인 기준 정비
처리기한 · 결과통보 · 정보공유 · 후속조치 의무의 법률 명확화

중장기
해외 대응 · 재유포 방지 · 성과평가 체계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조직 형태 검토

입법 성과는 권한의 양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 이후 탐지 · 조치 · 확인 · 회복의 원활한 연속성으로 평가돼야 한다

감사합니다

11

MEMO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안

전윤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책토론회 발표문(2026.10.14.)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안
-디지털성범죄 신속 대응체계 입법 방향

단순한 '삭제지원기관'을 넘어 통합 피해지원기
관으로 발전할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됨

전윤정(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현행 제도의 출발점

제도는 이미 통합 지원의 토대를 갖추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디성센터의 법정업무

01	피해 신고접수 · 긴급상담
02	불법촬영물 · 신상정보 삭제지원
03	연구 · 홍보
04	종사자 교육 · 컨설팅
0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06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센터 지원

단순한 '삭제지원기관'을 넘어 **통합 피해지원기관**으로 발전할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1. 현행 제도의 출발점

정부 정책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5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 중앙 디성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 전국 상담전화 **1366**으로 일원화
-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 연계 **종합대응체계**로 개편

2026 · 시행계획
-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기관 등과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 전담수사체계–피해자 보호기관 **협력망 강화**를 공식 과제로

제도 개선의 초점 업무협약·실무협의체 수준의 협력 → **공식적(법률적)인 상시체계로 전환**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 기본계획, 2026 시행계획)

2. 현행 제도의 한계

문제는 협력 여부가 아니라 협력의 근거다

현재 ·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수사에서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경찰청: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보호를 확대

한계 · 그 협력이 기대고 있는 것

- 기관 간 실무협조
- 업무협약(MOU)
- 개별 사건 담당자 간 협력

출처: 경찰청 자료 (2026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2. 현행 제도의 한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7가지

사건 연계

1 센터가 범죄혐의 발견 시 경찰에 통보할 근거

2 경찰이 피해자 발견 시 센터로 즉시 연계할 근거

정보 공유

3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상호 제공 근거

7 개인정보·민감정보·수사정보 공유의 범위와 제한

공동 절차

4 긴급 삭제·차단과 증거보전의 동시 실시

5 고위험 사건 공동 위험평가·사례관리

6 수사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

정보를 다루는 만큼 업무협약만으로는 부족 → **법률에 정보공유의 목적·범위·절차·보호장치 명시 필요**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필요성

명백한 불법촬영물도 심의를 거쳐야 차단된다

디성센터 → 플랫폼에 삭제 요청 → 삭제 불응 · 해외 사이트 → **방미심위**에 접속차단 요청 (심의 후)

전제 · 기관 명칭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2025년 설치법 제정, 시행령상 시정요구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

정부의 공식 진단 · 2026.4 통합지원단 출범

심의절차 때문에 **신속대응에 한계** →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 접속차단** 추진

지금이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적기

출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안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기본 방향

하나의 패스트트랙보다 '2단계 신속조치체계' 구축

모든 사건을 방미심위가 먼저 심의하지도, 방미심위를 완전히 우회하지도 않는 구조

중앙·지역 디성센터 (피해영상물 확인) → **명백한 불법촬영물인가?**

- **제1트랙** (명백) → 플랫폼 직접 긴급삭제 요청 → 2~6시간 → **삭제·차단**
- ↓ 불응·해외 사이트는 방미심위 패스트트랙으로 이관
- **제2트랙** (판단 필요 · 불응 · 해외) → 방미심위 긴급심의 → 24시간 이내 → **삭제·접속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할 의무 → 국내 플랫폼까지 모든 사건을 방미심위 심의에 묶어 둘 이유가 없다

3.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제1단계

디성센터에 '긴급삭제통지권' 부여 검토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 삭제지원 등 업무 수행

한계
센터 요청 시 사업자가 **일정 시간 안에 조치할 의무**가 불명확

보완
명백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플랫폼에 **긴급삭제·차단 통지**

「성폭력방지법」 신설 조문(안)

제○조(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 삭제통지)

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또는 그 밖의 유통방지 조치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연계 — 중앙디성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명확하게 포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3.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제2단계

일반 위원회가 아니라 '상시 긴급심의소위원회' 구성

주말·야간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은 실효성이 없다**

방미심위 내부에 상설화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소위원회」

구성 · 의결 (예시)
상임위원 또는 지정위원 3인
전자회의 · 화상회의 · 서면의결 허용

긴급사건 처리 흐름

24시간·365일 접수 → **당직전문관 검토** → **긴급소위 회부** → **전자의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법적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 별도 신속절차가 더욱 필요

3.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제3단계

가장 강력한 패스트트랙, '선차단-후심의'

정부도 명백한 불법촬영물까지 심의절차를 모두 거쳐야 차단되는 구조가 **신속대응의 장애**라고 지적

디성센터 긴급확인 아청물·명백한 불법촬영물 → **방미심위 사무처** 사업자에 임시차단 요청 → **임시접속차단** 24시간 또는 48시간 → **사후심의** 기간 내 심의위원회

⚠ 표현의 자유·적법절차 문제 → **대상범위를 매우 제한**해야 함

선차단 대상 (권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자 본인이 동일성을 확인한 명백한 불법촬영물

긴급심의 대상
딥페이크 등
진위·성적 표현 여부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관련)

3.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즉시 시행 방안

중앙디성센터에 방미심위 '전담연계관'

법률개정 전이라도 바로 시행 가능 방미심위 직원 또는 전담 연락관을 센터와 상시 연결

긴급사건 발견 → 일반 민원접수 없이 **전담채널로 바로 전송**

피해자 지원 중앙 디성센터 ⇄ 센터 내 설치 **Digital Sexual Crime Fast Track Desk** ⇄ **심의·차단** 방미심위 전담팀

신고로 피해자 발견 → 센터로 **자동 연계**

즉, 양방향 — 센터 → 방미심위 긴급 전송 + 방미심위 → 센터 피해자 연계

4.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기대효과

피해자 여러 번 신고하던 구조에서, 한 번 신고로 지속되는 구조로

지금 · 피해자가 발견할 때마다 반복

피해자가 센터에 신고 ➡ 센터가 플랫폼에 요청 ➡ 안 되면 방미심위에 다시 신고 ➡ 다시 심의를 기다림

전환 후 · 한 번 신고하면

센터가 불법성 확인 ➡ 국내 플랫폼 **즉시 삭제** ➡ 실패·해외유통은 **자동으로 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동시에 **경찰이 증거 확보** ➡ 재유포는 **해시값으로 차단**

4.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입법체계

3개 법률 개정 검토 필요

피해자 지원
「성폭력방지법」
디성센터의 **긴급삭제요청권** · 방미심위 협력 · 정보제공 근거

사업자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센터 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신속 삭제·차단** 및 **결과통보 의무**

심의·차단
「방미통위법」
방미심위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 · **신속접속차단** 근거

개정 방식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제2항

이미 법정업무: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여기에 방미심위·수사기관과의 신속연계 업무를 구체화**

4. 디성센터–방미심위 패스트트랙 · 법제화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협력체계를 법률로

2026.1 ·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 이행
반복 게재자·사이트 제재
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2026 · 통합지원단 출범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신속 차단' 추진

다음 단계
정책·협약 수준의 패스트트랙을 법률상 공식적 절차로

가장 중요한 입법원칙 — 방미심위 심의 자체를 패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정보
선삭제 또는 긴급처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
심의역량 집중

→ 피해확산을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적법절차 문제도 함께 통제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관련)

4. 디성센터 ·방미심위 패스트트랙 중장기 입법방향

디성센터 규정을 별도 절로 통합

단기
제7조의4제2항에 신속연계 업무 구체화

⬇

조문 1개가 아니라 장·절 신설 + 복수 조문으로 통합 규정

조문 구성 예시

1 센터의 설치·운영
2 센터의 업무
3 긴급 삭제·차단 요청
4 수사기관·방미심위 연계
5 정보의 제공 및 보호
6 지역센터의 지정·운영
7 비밀유지·전담인력
8 운영 평가·국회 보고

검토 쟁점

타법과 역할분담
사업자 의무·심의는 소관 법률에 두고 서로 인용

정보공유 보호장치
목적·범위·절차·파기·벌칙 명시

운영주체 위상
진흥원 내 설치 구조 유지 여부

중앙–지역 분담
같은 절 안에서 역할 정리

4. 디성센터 방미심의위 패스트트랙 · 하위법령

하위법령에 위임할 사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명백한 불법촬영물등’ 판단 기준·확인 절차
- 긴급요청 방식(전담채널)·조치 기한·결과통보
- 사업자가 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유형
- 공유 정보 항목·요청 절차·보관기간·파기
- 수사기관 통보·피해자 연계 기준, 피해자 동의 절차

전기통신사업법·방미통위법 시행령
- 제22조의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디성센터 명시
- 긴급심의소위 구성·당직·전자의결 운영
- 임시차단 기간(24·48시간)·사후심의 절차
- 사업자·피해자 이의제기 절차

시행규칙·고시·지침
- 요청서·결과통보서 서식
- 해시값 DB 등록·공유·관리 기준
- 지역센터 지정 요건, 전담인력 자격·교육
- 처리 실적 관리·운영 평가 지표

위임의 한계 (헌법 제75조)

요청의 법적 효과, 선차단 대상 범위, 정보공유 목적·범위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핵심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절차의 세부만 위임

종합토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 및 재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노현서 부단장 |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 **수사 현장에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최근 발생·검거 현황 분석 및 대응 정책**

  조승노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 **제도와 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중요성**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흰뫼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에서 본 피해지원체계 강화 방안**

  문옥희 센터장 |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MEMO

MEMO

MEMO

MEMO